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1. 5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무안국제공항은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육성 지원 및 공항 확장 등 역할을 증대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따른 동북아 교통 및 복합물류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임
- 또한, 광주·무안국제공항 통합(2021년), 대형항공기 취항 및 중·장거리 항공노선 신설 등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따른 수요 변화 대비함을 목적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을 계획하고자 함
- 한편,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MRO)의 수요 대비 산업단지 운영과 연계한 공항시설 평면배치를 수립할 계획임

1.2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 본 무안국제공항은 호남권 신공항(무안) 개발사업으로 1999년 1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하고 2000년 5월 26일 실시계획 최초 승인, 2007년 11월 사용개시 후 운영중이며, 금회 활주로 연장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실시함

〈표 1.2-1〉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②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표 1.2-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본 사업	○ 활주로 연장으로 인한 사업지구 증가면적이 당초 환경영향평가시(2,453,000㎡)보다 294,000㎡ 증가되어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20만㎡) 이상 증가에 해당함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3], 2020.7, 환경부

1.3 사업의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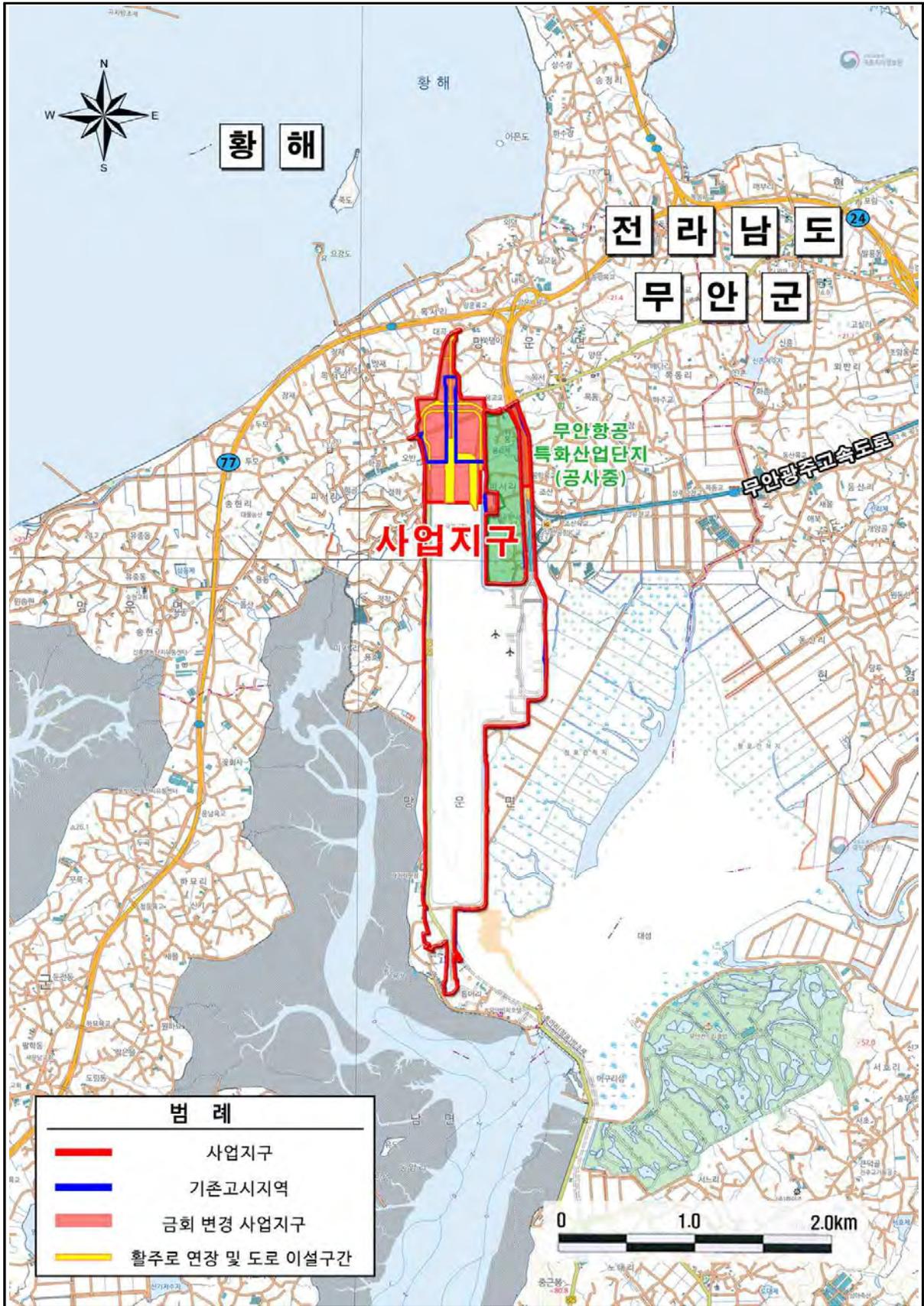
일 자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비 고
1994.04.19	•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고시(교통부 고시 제1994-24호)	-
1998.12.16 (기본계획)	• 무안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03호)	면적 2,420,000m ²
1999.11.27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환경67121-1101)	면적 2,453,000m ²
1999.12.28	• 호남권 신공항(무안) 공사 착공	-
2000.05.26 (실시계획 최초 승인)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최초 고시(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0-12호)	면적 2,409,131m ²
2000.09.14 (실시계획 변경)	• 경계지역 분할측량결과 편입면적의 변경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0-28호)	면적 2,392,043m ²
2001.06.23 (기본계획 변경)	• 추후 항공수요 증가 추이에 따른 단계적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63호)	면적 2,580,000m ²
2002.11.19 (실시계획 변경)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활주로 말단 진입구역 장애물제거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2-32호)	면적 2,532,493m ²
2006.12.05 (기본계획 변경)	• 국가재정 운용, 투자계획 조정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6-45호)	면적 2,580,000m ²
2007.07.18 (실시계획 변경)	• 이착륙장에 필요한 시설 추가설치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7-16호)	면적 2,585,733m ²
2007.11.08	• 무안국제공항 사용개시(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7-39호)	면적 2,585,733m ²
2008.05	•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
2008.10.16 (기본계획 변경)	• 무안공항의 확장을 고려한 19방향의 활주로 보호구역의 확보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75호)	면적 2,680,000m ²
2008.11.12 (실시계획 변경)	• 무안공항의 확장을 고려 19방향의 활주로 보호구역 확보하고 사업 기간 변경(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8-70호)	면적 2,682,000m ²
2010. 04	• 공항운영등급 상향 운영(7등급→9등급)	-
2015.11.30 (기본계획 변경)	• 유도로 당초 6분에서 변경 7분으로 증가(사업주체 : 서해해양경비 안전본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4호)	면적 2,696,000m ²
2017.09.22 (실시계획 변경)	• 광주공항 통합시 항공수요 증가 대비 계류장 확장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17-37호)	계류장 확장 (22,834m ²)증가
2019.08.12	• 관계기관(무안군청, 전라도청) 사전협의(815호선 지방도 이설)	-
2020.07.02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 협의) 협의완료(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1878)	면적 2,885,000m ²
2020.11.05 (기본계획 변경)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기본계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78호)	면적 2,747,000m ²
2020.11.27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실시계획용역 착수	-
2020.12.15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용역 착수	-
2021.0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1.06.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21.09.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

1.4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일원
- 규모 : 2,747,000㎡(당초 환경영향평가지 면적 : 2,453,000㎡, 누적증가 면적 : 294,000㎡)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항공청
- 승인기관 : 부산지방항공청
- 사업기간 : 2021~2023년
- 사업비 : 350억원
- 사업의 주요 내용
 - 활주로 연장(현 계획안 : 360m 연장)
 - 평행 유도로 연장 및 직각연결유도로, 착륙대 및 기타시설 등 설치
 - 도로 이설(지방도 815호선 및 면도 101호선 등)

1.5 사업의 기대효과

-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로 지역개발 잠재력 고조 효과
- 지역의 소득, 산업구조, 고용, 재정을 강화시키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의 이미지 향상, 문화교류, 관광개발 등 효과



(그림 1-1) 사업지구 위치도

1.6 사업의 주요 내용

- 금희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에 따른 활주로, 유도로, 착륙대 및 기타시설 등 설치, 도로 이설 계획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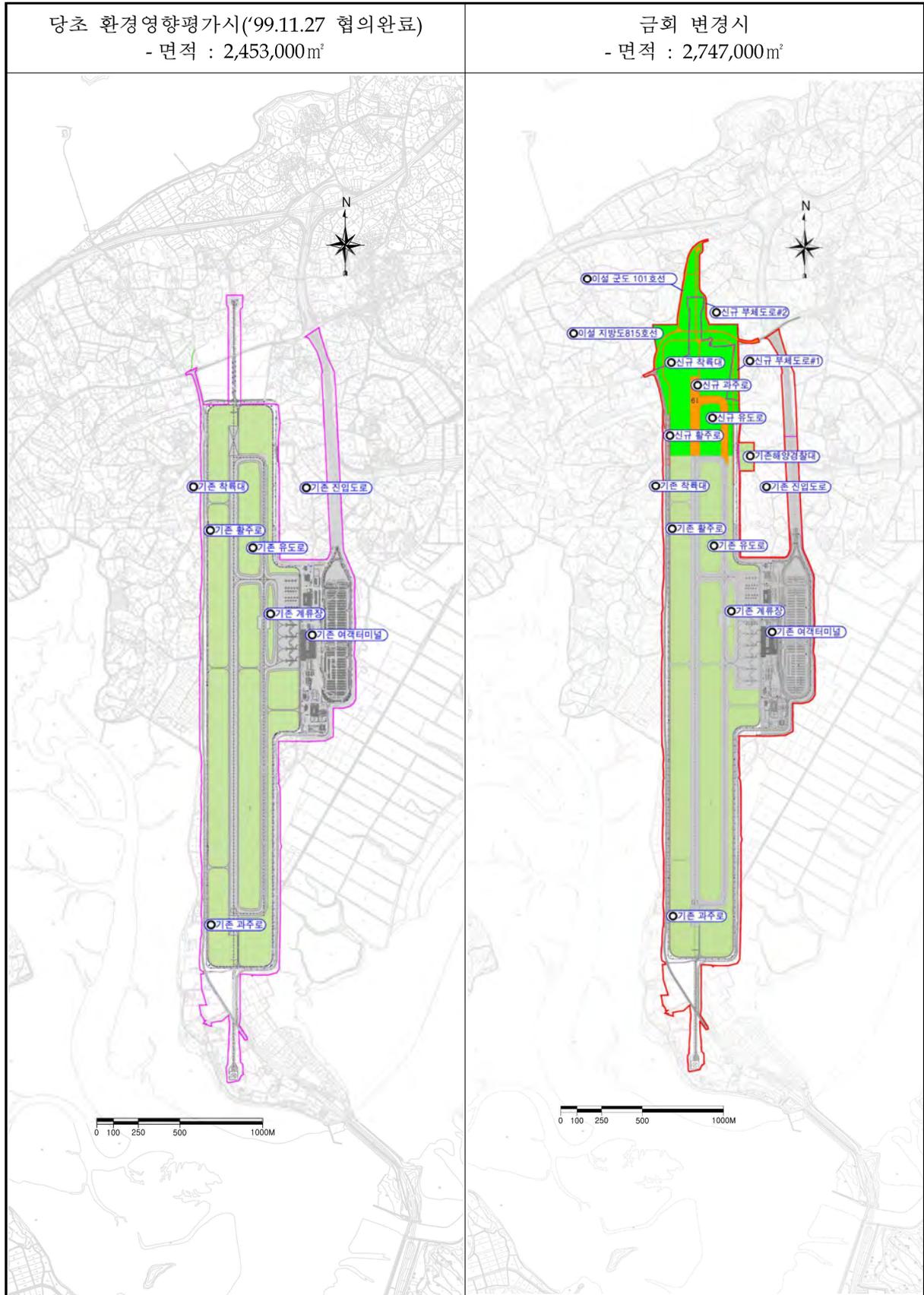
가. 토지이용계획안

- 금희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은 다음과 같음

〈표 1.6-1〉 토지이용계획표 당초 및 변경

구 분	당 초(m ²) (최초환경영향평가시, 1999.11.27)	변 경(m ²) (금희)	증·감 (m ²)	비 고
활주로	190,000	204,000	▲ 14,000	
유도로	26,400	183,391	▲156,991	
계류장	102,500	113,094	▲ 10,594	계류장 확장은 2018.05 준공
여객터미널	25,160	20,000	▲ 7,058	
		9,106		
화물터미널	3,112			
기타부대건물	2,500	2,500	-	
동력동	2,320	3,441	▲ 1,121	
주차장	103,790	66,990	▼ 36,800	
내·외곽도로	189,340	202,767	▲ 13,427	
진입도로	47,700	47,700	-	
항행안전시설	CAT-1	CAT-1	-	
착륙대 및 기타시설	1,763,290	1,874,899	▲111,609	
해양경찰대	-	16,000	▲ 16,000	2017.11 준공
계	2,453,000	2,747,000	▲294,000	

- 주) 1. 당초 활주로는 과주로(14,400m²), 회전패드 및 노건을 포함한 면적이며, 변경 활주로는 과주로(14,400m²) 및 노건을 포함한 면적임
 2. 유도로는 노건 포함 면적임
 3. 토지이용계획표 변경은 당초 최초 환경영향평가시('99.11.27)와 금희 변경시 토지이용계획을 비교·제시 하였으나, 금희 활주로 연장사업에 따른 실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음영표기된 활주로, 유도로, 내·외곽 도로, 착륙대 및 기타시설만 해당함(그 외 시설은 실제 변경 없음)



(그림 1-2) 토지이용계획도 당초 및 변경

나. 시설배치계획안

- 활주로 : 3,160m(폭 45m, 활주로 360m 연장)
- 유도로 : 평행유도로 3,160m(폭 23m, 평행유도로 360m 연장)
직각연결유도로 148m(폭 28m) 1본 추가 설치
- 착륙대 : 3,280m(폭 300m, 착륙대 360m 연장)
- 설계항공기 : A330-300(E급), A350-900(E급), B777-300ER(E급), B787-9(E급)
- 활주로 운영등급 : 양방향 CAT-1
- 금회 공항시설(Airside)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공항부대시설 계획은 기존시설과 동일함

〈표 1.6-2〉 공항시설(Airside) 계획(변경)

시설명		시설규모		비고
활주로		본	3,160X45m(1)	01-19
유도로	직각유도로	본	148X28m(3) 148X33m(1) 50X39m(1) 50X40m(1) 76X23m(1)	
	평행유도로	본	3,160X23m(1)	
계류장	국내선, 국제선, 화물터미널, 소형항공기	m ²	113,094	
착륙대		m	3,280X300m	일방향 : 150m

〈표 1.6-3〉 공항부대시설(Landside) 계획(변경없음)

시설명		연면적(m ²)	층수	구조	비고
여객터미널	국내	20,000	지하1, 지상2	철골철근콘크리트	
	국제	9,106	지하1, 지상2	"	
화물터미널		3,112	지하1, 지상1	철골조	경항공기 정비고 포함
관제탑/통신소		493	지하1, 지상9	철근콘크리트조	높이 : 40m
통력동		3,441	지상2		
송신소외 30동		9,157	각종		

다. 도로이설 계획안

- 금회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에 따른 기존도로(지방도 815호선 및 면도 101호선 등)의 이설이 필요하며, 도로이설 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1) 지방도 815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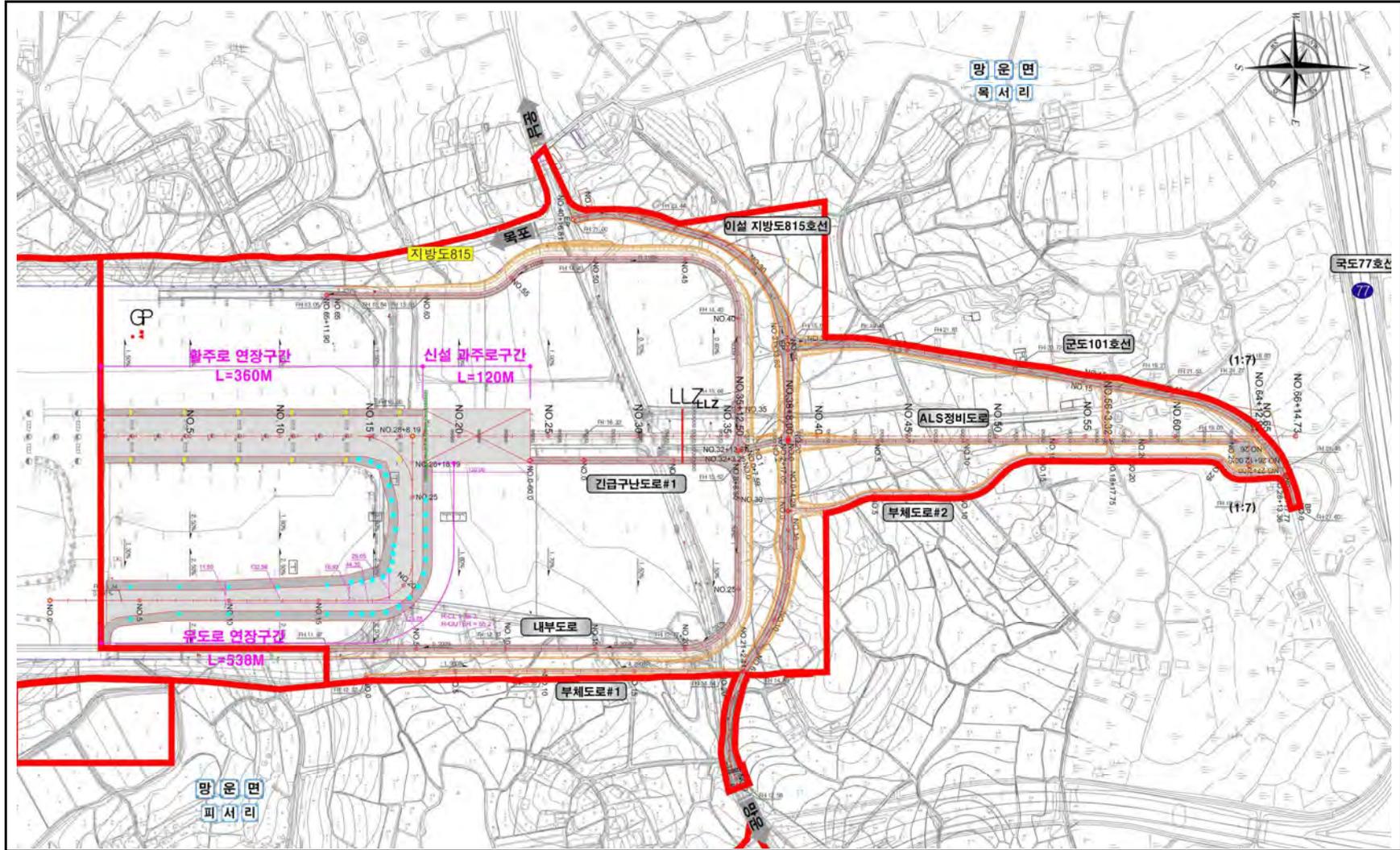
- 금회 활주로 연장에 따른 활주로 19방향의 지방도 815호선 이설이 불가피하며, 전라남도와의 사전협의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함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10번지 일원
- 규모
 - 설계속도 : 60km/hr
 - 연장 : 0.856km(왕복2차로)
 - 폭원 : 9.5m
 - 유출입시설 : 5개소

2) 면도 101호선 등 기타도로

- 금회 활주로 연장에 따른 활주로 19방향의 면도 101호선 및 부체도로와 구내도로(공항내부 점검도로) 등이 공항 부지내로 편입되어 도로의 단절로 공항의 내부순환 및 유지보수에 차질이 발생하며, 지역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기존 도로의 기능을 대체할 도로의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도로의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함

〈표 1.6-4〉 도로이설 계획안

구 분	이설연장(m)	이설폭원(m)	비고
① 지방도 815호선	856	9.5	왕복2차로
② 면도 101호선	500	8.0	왕복2차로
③ 부체도로	500	5.0	1차로
④ 구내도로(공항내부 점검도로)	1,200	8.0	왕복2차로



(그림 1-3) 김희 변경시 사업지구 계획안 총괄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대상지역 설정

- 사업시행으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업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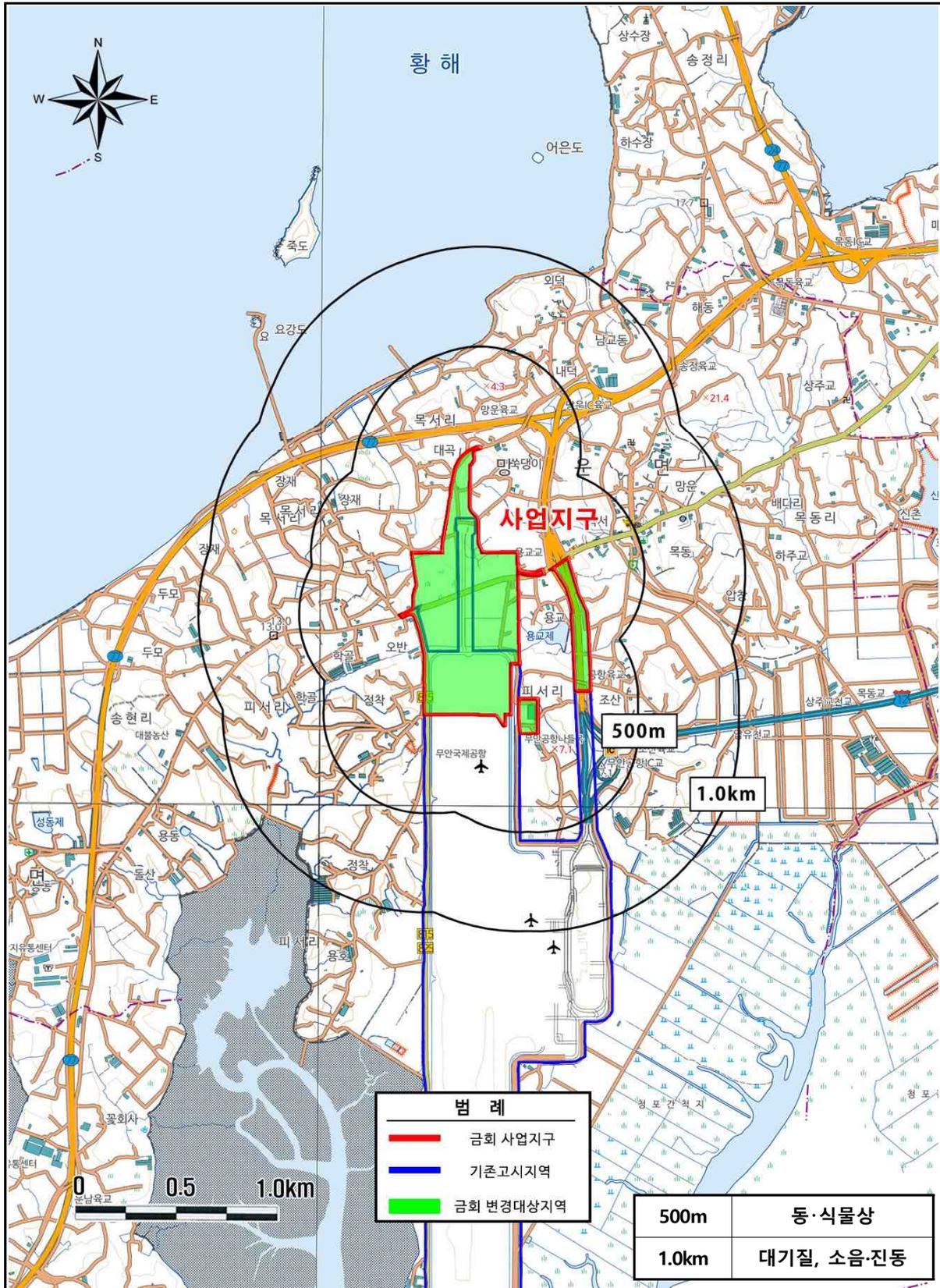
〈표 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항 목		구 분	평 가 대 상 범 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 동계조류 현지조사: 무안저수지, 무안군 현경면·운남면, 무안·목포해안 등 동계조류센서스 일부지역 포함 - 동계조류 문헌조사: 조류충돌위험 지역(공항 반경 13km)내 철새도래지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 자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대기 환경	기 상	○ 주변 목포기상대	2010~2019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국지기상 분석 ○ 대기질 영향예측·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km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토공사 및 건설장비 가동, 운영시 공항 운영 및 이설도로 차량통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온실가스	○ 사업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장비투입 및 운영시 공항 운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수 환경	수 질 (수리·수문)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시 및 운영시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 유출과 운영시 용수 공급 및 오·폐수 발생,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우수유출량 등 검토	
	해양환경	○ 사업지구 주변 해역 - 주변 갯벌 및 양식장 등 어업권	공사시 및 운영시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토사의 해양유입이 예상되는 주변 해역 - 단, 사업지구 주변은 하천 등 수계가 발달되지 않고, 농수로를 통해 우기시 수계 형성이 예상되며 농수로 유입전 저감시설을 통해 토사유출 영향 배제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사업지구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편입 및 토지이용상의 변화 예상 지역	
	토 양	○ 사업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으로 인한 영향예상지역	
	지형·지질	○ 사업지구	공사시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 토량이동 등이 예상되는 지역	

〈표 2.1-1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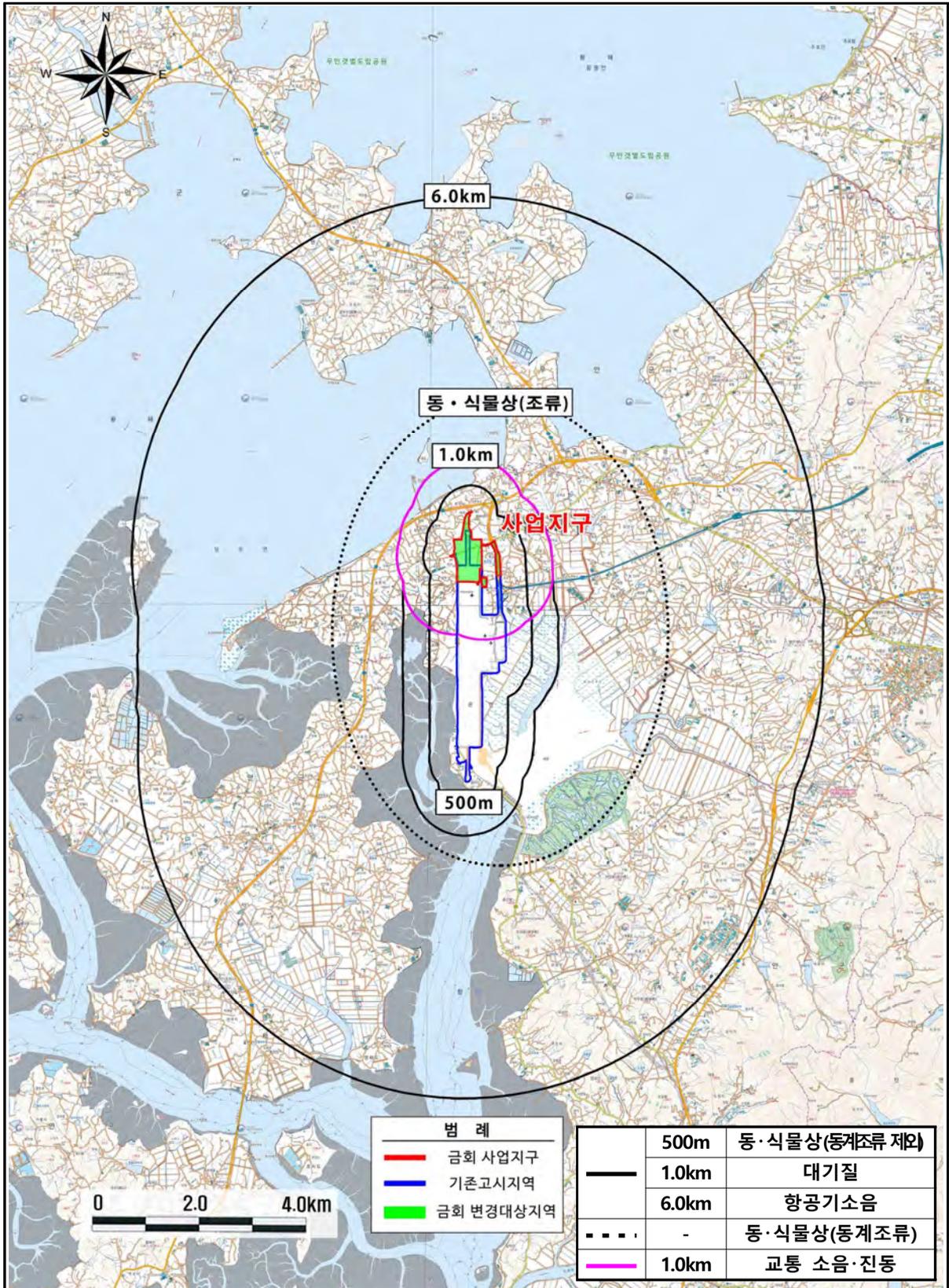
항 목		구 분	평 가 대 상 범 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진동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km - 항공기소음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6km 이내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 및 운영시 이설 도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지역 ○ 항공기 운영으로 인한 소음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위락·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시설 이용변화 및 공항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전파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 공항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에 전파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산 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적 효과가 예상 되는 지역	

- 주) 1. 공사시는 급회 변경대상지역으로부터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단, 동·식물상 항목의 동계조류 평가대상 범위는 동계조류센서스 일부지역 포함)
2. 운영시는 동·식물상, 대기질, 항공기소음의 경우 기존 사업지구와 급회 변경대상지역의 전체 대상지역 으로부터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단, 동·식물상 항목의 동계조류 평가대상범위는 동계조류센서스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조류 충돌위험지역(공항반경 13km)내 철새도래지 문헌조사를 토대로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검토)
3. 운영시 도로 교통소음의 경우 급회 변경대상지역으로부터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



주) 공사시는 금회 변경대상지역으로부터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단, 동·식물상 항목의 동계조류 평가대상지역은 무안저수지, 현경면·운남면, 무안-목포해안 등 동계조류센서스 일부지역을 포함할 계획임)

(그림 2.1-1) 공사시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주) 동·식물상 항목의 동계조류 평가대상지역은 무안저수지, 현경면·운남면, 무안-목포해안 등 동계조류센서스 일부지역을 포함하며, 조류 충돌위험지역(공항반경 13km)내 철새도래지 문헌조사를 토대로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검토할 계획임

(그림 2.1-2) 운영시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2.2 환경영향평가항목의 선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평가항목·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붙임2], 2011.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업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2.2-1〉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 결과	선정사유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중점	○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물상 및 동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자연환경자산	일반	○ 통계자료를 이용한 사업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의 현황 파악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대기환경	기 상	일반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대기질	중점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발생, 운영시 공항시설 연료사용 및 항공기 운항, 이 설도로 차량통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악 취	제외	○ 사업시행으로 인한 악취유발 영향은 없어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온실가스	중점	○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 운영시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수환경	수질	중점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운영시 오·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수리·수문	중점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수질”편에 포함 검토)
	해양환경	중점	○ 사업지구(금회 증가되는 부지)는 북측 해양으로부터 약 45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농수로 연결을 제외하고 수계가 형성되지 않으나 공사 중 토사유출시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우 영향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표 2.2-1 계속〉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분 야	항 목	결정 결과	사 유
토지환경	토지이용	중점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토양	중점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운영시 토양오염유발시설 운영 등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지형·지질	중점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및 토사유출, 비옥토 발생, 사면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중점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소음·진동	중점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운영시 항공기 운항 및 이설도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영향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위락	일반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위락요소를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변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일반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경관	중점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를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위생·공중보건	제외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전파장해	중점	○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일조장해	제외	○ 고층건물 입지계획이 없어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일반	○ 사업시행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및 인구·주거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산업	일반	○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적 효과 검토를 위해 일반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2.3 환경영향평가 조사·예측·평가방법

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

-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본 사업 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현황조사자료 등)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임
 - 예측은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온시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예측할 계획임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2.3-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동·식물상	①조사내용 : 육상동·식물상 및 육수생물상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약 0.5km - 동계조류 현지조사: 무안저수지, 무안군 현경면·운남면, 무안-목포해안 등 동계조류센서스 일부지역 포함 - 동계조류 문헌조사: 조류충돌위험지역(공항 반경 13km)내 철새도래지 ③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2회(동계조류 포함시 3회)	○ 사업시행으로 주변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 조류충돌위험지역(공항 반경 13km)내 철새도래지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류 서식 및 이동특성 분석 및 항공가조류 충돌 영향 검토
자연환경자산	①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기상	①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와 인접한 목포기상대 ③조사방법 : 관련 기상관측자료	○ 기상연보 자료 분석·정리
대기질	①조사내용 : 주변 대기오염 발생원 및 대기 영향예상시설 분포현황, 대기질 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약 1km ③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 조사 - 측정지점 : 2개 지점×3회(3일연속)	○ 공사시 토공사 및 건설장비 가동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 대기확산모델링 수행을 통해 영향 예측 ○ 운영시 공항 운영 및 이설도로 차량통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 대기 확산모델링 수행을 통해 영향 예측
온실가스	①조사내용 : 주변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파악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자료 조사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수질 (수리·수문)	①조사내용 : 지표·지하수질 현황, 주변 수계 현황,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관련 지정 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③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 조사 - 측정지점 : 지표수질 4개 지점×3회 지하수질 2개 지점×3회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량 산정 ○ 시설운영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 예측 ○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검토

〈표 2.3-1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해양환경	①조사내용 : 주변 해양환경(해양수·저질, 해양 동·식물상) 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주변 해역 - 주변 갯벌 및 양식장 등 어업권 고려 ③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 조사 - 측정지점 : 해양수질 2개 지점(표·저층)×3회 해양저질 2개 지점×3회 - 조사지점 : 해양동·식물상 2개 지점×3회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시 토사의 해양 유입으로 인한 영향 검토 - 단, 사업지구 입지특성상 주변은 하천 등 수계가 발달되지 않고, 농수로를 통해 우기시 수계 형성이 예상되며 농수로 유입전 저감시설을 통해 토사유출 영향을 배제할 계획임
토지이용	①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분포 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예측 - 사업관련 계획 참조
토양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토양오염도 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측정지점 : 2개 지점×3회	○공사시 공사장비 운영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검토 ○운영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으로 인한 영향 검토
지형·지질	①조사내용 : 지형·지질 현황, 특이지형 분포 현황 등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 자료 및 본 사업 지반조사 보고서 등 참조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조사방법 : 자료 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 원단위법 이용
소음·진동	①조사내용 :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시설 분포 현황, 소음·진동 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약 1km - 항공기소음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약 6km ③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측정지점 : 2개 지점×3회(생활소음·진동) (항공기소음은 환경부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자료, 본 사업 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시 항공기소음 측정자료 활용)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항공기 운항 및 이설도로 통행차량에 따른 소음도 예측 - 항공기소음예측 : INM소음모델링
위락·경관	①조사내용 : 위락 및 경관 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	○사업지구 주변 위락·경관 요소 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 경관시물레이션
전파장해	①조사내용 : 주변 전파장해 유발시설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자료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 검토 - 자료 및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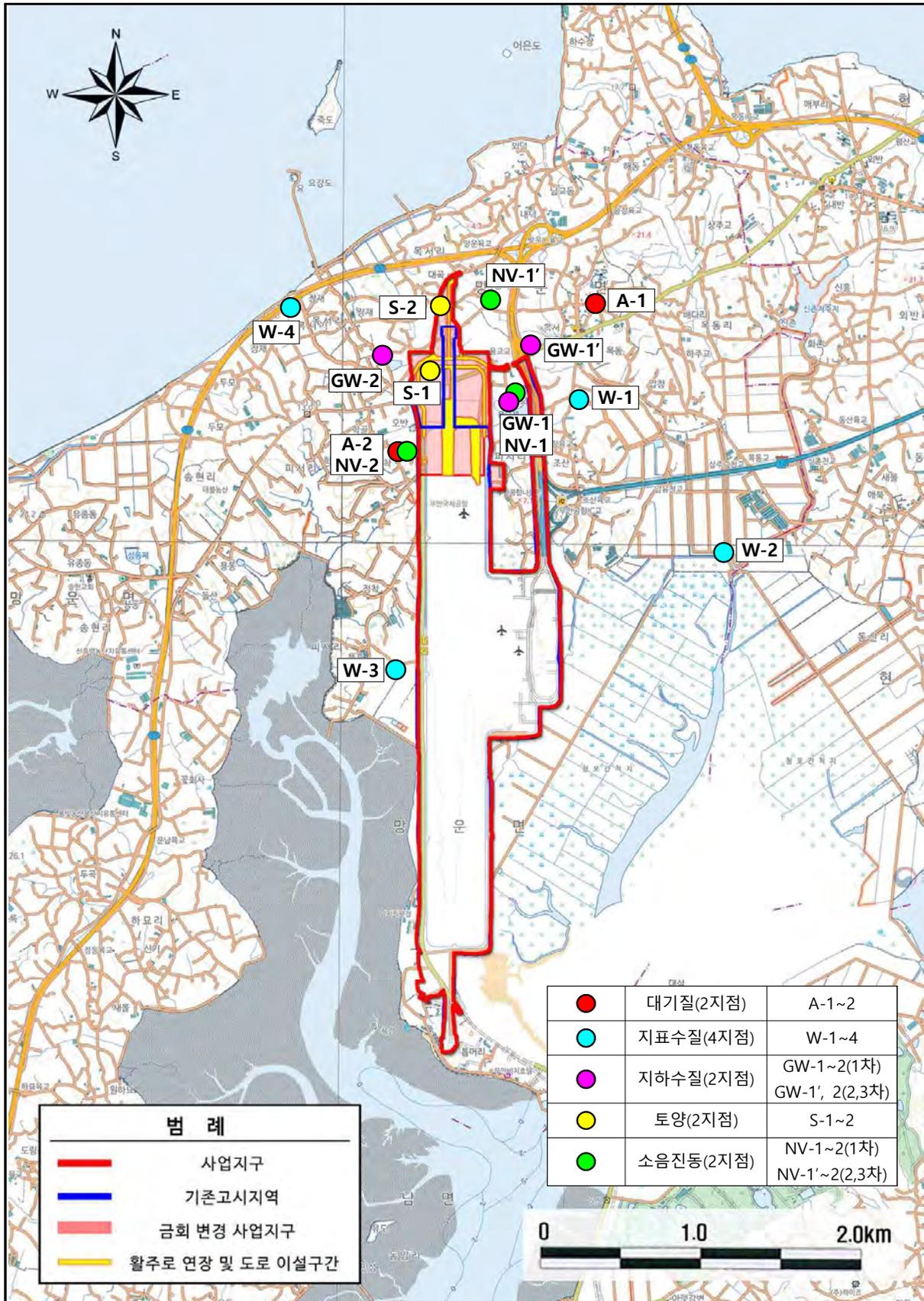
〈표 2.3-1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인구·주거	①조사내용 : 인구현황 파악 및 장래 인구 변화 예측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자료(통계연보)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예측 -자료 및 사업관련 계획 참조
산업	①조사내용 : 산업현황 파악 및 장래 산업변화 예측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자료(통계연보)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 변화 예측 -자료 및 사업관련 계획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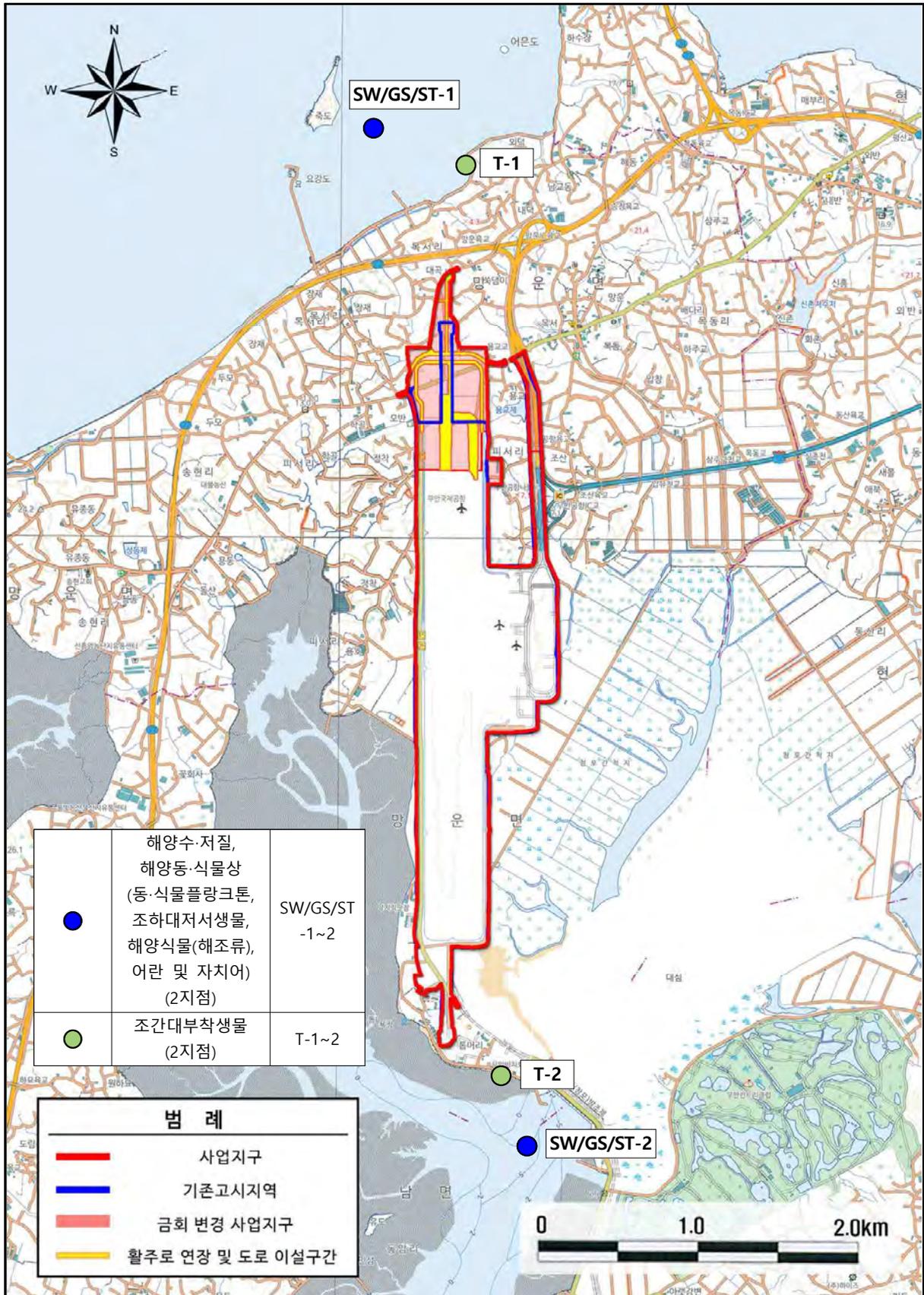
주) 동·식물상 등 현황조사시 급회 변경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동·식물상 항목의 동계조류 현지 조사시 대상범위는 동계조류센서스 일부지역 포함

〈표 2.3-2〉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항목

구 분	현 황 조 사	비 고
대기질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8개 항목)	
지표수질	○유량, 수온, pH, BOD, COD, SS, DO, T-N, T-P, 총대장균군, chl-a,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ABS, 벤젠, TOC(22개 항목)	
지하수질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Pb, F, As, Hg, CN, Cr,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Cd, 페놀, 유기인, TCE, P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총경도, KMnO ₄ 소비량, Cu, 색도, pH, Zn,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33개 항목)	
토 양	○Cd, Cu, As, Hg, Pb, Cr, Zn, F, 유기인, PCE, CN, 페놀, TCE, 벤조피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PCB(20개 항목)	
소음·진동	○소음도(주간4회, 심야2회), 진동도(주간2회, 심야1회)	
해양수질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수, T-N, DIN, T-P, DIP, Cr ⁶⁺ , As, Cd, Pb, Zn, Cu, Hg, CN, Ni, 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 클로로필-a,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저층DO포화도(36개 항목)	
해양저질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유기탄소량, As, Cd, Cr, Cu, Hg, Ni, Pb, Zn, Fe, PCBs, PAHs, T-N, T-P, Li(20개 항목)	
해양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저서생물, 조간대부착생물, 해양식물(해조류),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문헌조사)	



(그림 2.3-1) 조사지점도(대기질, 지표·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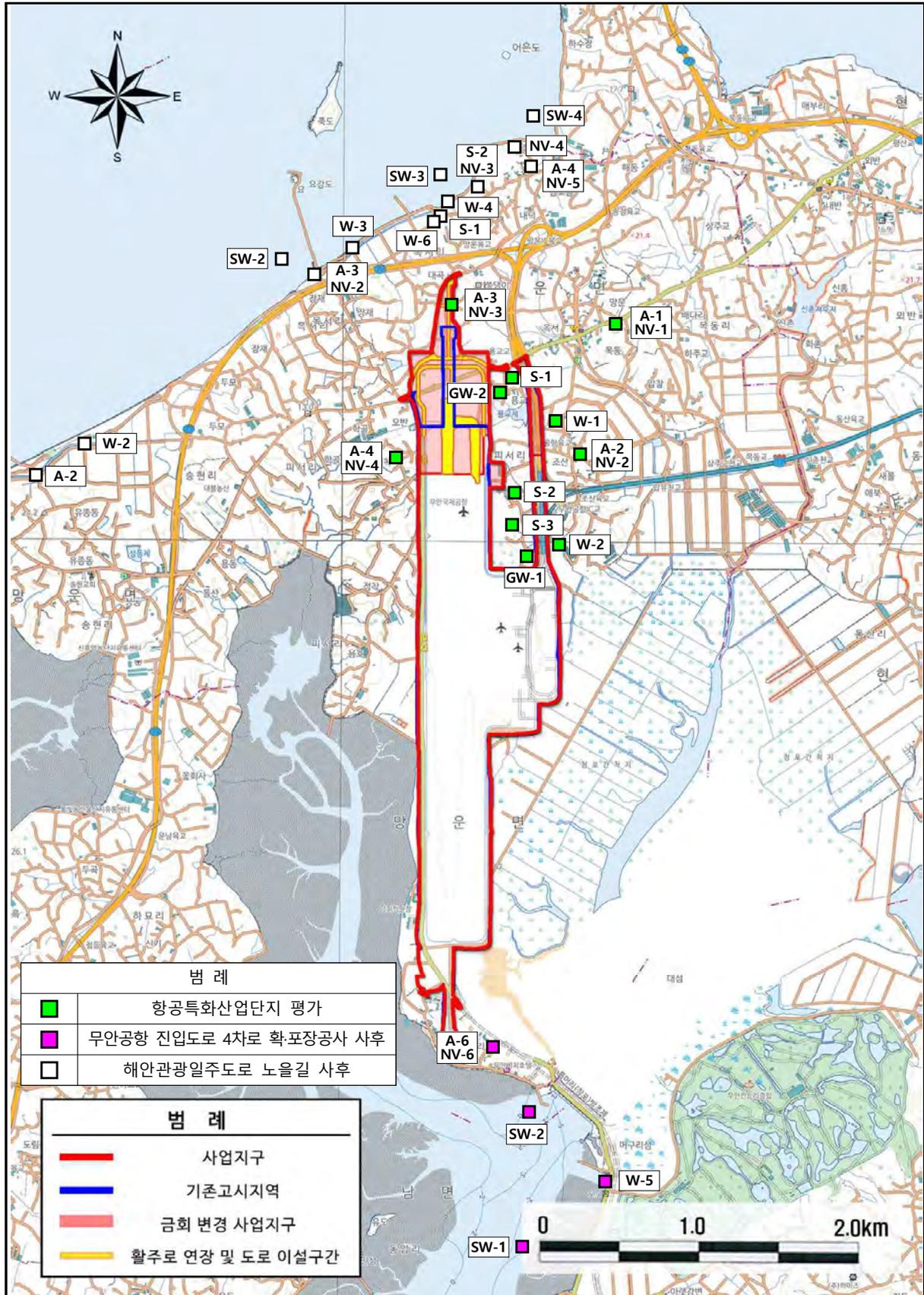
(그림 2.3-2) 조사지점도(해양수·저질, 해양동·식물상)

나. 문헌자료 및 기존자료 조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외에 추가로 환경부 자동측정망 자료, 주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환경현황조사 결과자료를 인용할 계획임
- 문헌자료 조사 목록
 - 환경부 자동측정망 자료(대기질-무안읍, 항공기소음-대곡경로당, 톱머리주유소, 내덕 경로당, 외덕마을), 해양환경측정망(무안1, 무안2) 등
- 기존자료 조사 목록
 -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0.02, 무안군
 - 무안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2020.12, 전라남도
 - 무안 해안관광일주도로 노을길 조성사업(1~2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2021.01, 무안군



(그림 2.3-3) 사업지구 주변 자동측정망 위치도(문헌조사)



(그림 2.3-4) 사업지구 주변 환경현황 조사지점 위치도(자료조사)

제3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3.1 평가항목결정내용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공개(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간 그 내용을 게시

3.2 주민의견 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지구가 위치한 무안군의 홈페이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할 계획임

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무안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을 게시하고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및 공람의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무안군청, 망운면사무소 등 공람장소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세부 공람장소는 추후 협의)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중 1회(설명회 개최공고 7일 후) 실시할 계획임
- 설명회 장소는 추후 무안군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며, 공청회는 아래와 같이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요건 해당시 추진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

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3.3 관계기관 의견 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협의기관의 장(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기관의 장(부산지방항공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전라남도, 무안군) 등의 의견수렴 예정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4.1 협의회 운영 및 결정내용 공개 개요

4.1.1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표 4.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1.2 평가준비서 심의

- 심의안건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심의방법 : 서면심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 심의기간 : 2021.04.07~04.23
- 심의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기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표 4.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구분	소 속	성 명	직 책	비 고
1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이OO	과장	위원장
2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송OO	팀장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3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조OO	팀장	승인기관 소속공무원
4	호남대학교 교수	이OO	교수	위원장 추천 민간전문가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OO	선임연구 위원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6	무안군 환경과	김OO	팀장	관할 지자체 소속공무원
7	무안군 망운면 번영회	송OO	번영회장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8	푸른무안21협의회	박OO	사무국장	시민단체
9	목포대학교	임OO	교수	해양관련 전문가

저장 : 김남엽 / 공항시설과 (2021-04-07 17:13:21)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부산지방항공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요청

1.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심의하고자 귀하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오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협의회 운영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면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평가준비서를 검토한 후 붙 통보서를 작성하여 2021.4.23.(금)까지 제출(공문 또는 서명 후 메일 송부 sky1321@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양식) 1부.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1부.
 3.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1부(별송). 끝.

부산지방항공청장

수신자

주무관 주무관 공항시설과장 공항시설국장 전결2021.4.7.

협조자

시행 공항시설과 접수

우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부산지방항공청 / <http://www.molit.go.kr/broa>

전화번호 051-974-2180 팩스번호 051-974-2188 / knv1321@molit.go.kr / 비공개(6)

일자리가 성장이고

문서관리카드공항시설과-1443 1-1

4.2 위원별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총괄의견

- 본 건은 기 운영 중인 무안국제공항의 대형 항공기 취항 및 중장거리노선 신설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활주로 연장(360m)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제시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활주로 연장 건설에 따라 공사·운영 시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사업부지, 인근지역, 비행 영향권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은 Action, No action 외에 계획특성에 맞는 대안을 설정하고 환경적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비교하여 최적방안을 선정·제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환경현황 조사지점은 공사·운영 시 영향예측지점·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등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각 항목별 환경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항목별 조사 시기를 설정·제시하여야 함

- 평가대상 지역범위는 대형 항공기의 취항 등으로 인한 비행범위의 확대 등을 고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설정하여야 하며,
- 겨울철 조류 센서스지역 등 철새 도래지와 연결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계절별 조사를 통해 공사·운영 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

- 환경현황 조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사업부지와 상당거리 이격되어 있는 문헌 조사 제외)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조사는 대상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기에 시행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사업은 소음·진동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므로 사업 대상지역 및 영향권지역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계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선정, 적극적 홍보(현수막, 마을방송 등)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참여율을 제고
-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가요약서’ (사진·그림 활용, 전문용어 사용자제, 수치비교 등)를 작성·제공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약식평가 비 대상

6. 기타

-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1. 4. .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총 관 의 건

-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대상지역,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활주로 연장에 따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활주로 연장에 따른 항공기 운항 증가로 인한 항공기 소음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향 범위를 충분히 넓게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활주로 연장에 따른 항공기 운항계획 변경을 고려하여 항공기 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필요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의 설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토사유출에 따른 주변 민원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또한, 운영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주변지역 소음 발생과 조류 충돌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이해당사자 등 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없음

2021. 4. 21.

심의위원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총괄 의견

-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계획 수립이 강구되어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지구 주변(무안저수지, 현경면·운남면 등)은 겨울철새 도래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충분한 조사범위를 설정하여 면밀한 조사 및 영향검토가 요구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주변지역 생태조사 결과 범정보호종 등 발견시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실제 사업 시행시 영향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면밀한 생태조사(현지 및 문헌조사)를 통해 주변지역의 생태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함
 - 활주로 연장으로 인해 철새 서식과 이동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조류의 항공기 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책수립이 요구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2021. 4. 22.

심의위원 c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 총괄 의견

- 본 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일원에 2,747,000㎡의 면적으로(당초 : 2,453,000㎡, 증가 : 294,000㎡) 무안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임.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서남해 철새들의 주된 서식역이자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지역으로 철새들의 서식과 이동이 빈번한 공간역임. 조류 종과 서식역에 대한 보존적 노력과 공항내 항공기-조류충돌안전의 문제가 상충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므로 활주로 연장에 따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항목별로 활주로 확장 및 연계사업(도로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평가범위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조류서식 현황과 이동에 관한 현황조사 시 법적 조류충돌위험지역(공항 반경 13km)을 고려한 대상지역 설정이 필요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No-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규모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야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 활주로 연장에 따른 법적 조류충돌위험지역(공항 반경 13km)에서의 조류서식 현황과 이동 등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이 실시되어야 함
 - 무안국제공항 내외에서의 조류서식 현황, 항공기-조류충돌 예방방안 및 충돌현황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활주로 확장 시 영향 여부 및 관리계획 등을 검토

- 무안국제공항 또는 한국공항공사 내 조류퇴치팀 등과 같은 관계부서의 협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실시
- 소음·진동 : 사업 시행 이전 및 이후(활주로 연장)에 따른 항공기 소음 영향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활주로 연장에 따른 공항 운영계획 정보(항공기 종류/대수/경로 등의 변화 등) 포함
 - 항공기 소음영향지역에 대한 노출 면적, 노출 정온시설 종류 및 개수, 노출 세대수, 노출 인구수 등의 비교
 - WECPNL에 의한 항공기 소음예측결과와 가중등가소음도(Lden)에 의한 항공기 소음예측결과
- 대기질 : 향후 항공기 운항량 변화, 승객 이용률 증가 등이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배출량 변화, 교통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확장 및 연계된 도로이설 계획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소음 등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측 및 현황 자료, 그리고 저감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필요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없음

행정 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2021. 04. 21.

심의위원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총괄 의견

- 자연생태환경 현황 및 영향예측과 저감·보전대책의 심도있는 검토와 환경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무안국제공항지구는 겨울이면 천연기념물인 황새 등 여러종의 철새가 출현하는 창포호 연접지로서 창포호 수면면적을 전부 포함하여 평가 필요
※ 창포호 : P35 도면에 무안 저수지로 표기됨

2. 환경현황 및 대안

- 무안국제공항지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수달, 삿, 매, 황조롱이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으므로 활주로 연장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보호 대책 제시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항공 관련 시설지구이므로 운영시 발생 예상되는 폐기물분야 추가와 대기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저감방안의 조사, 평가 및 대안 제시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적정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일반평가 대상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활주로 연장은 물론 공항운영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좀더 심도있고 적극적인 조사와 대안제시가 필요

2021. 4. 26.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총괄의견

○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을 약간 벗어난 인접지역에 정온시설 등 인구밀집지역(목동,목서,목남,목북마을)이 소재하는 바, 소음진동평가범위를 현재 500m에서 1.0km로 확대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현장에서 면소재지가 지근거리로 공사시 차량, 농기계, 도보이동자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사업대상지역이 대부분 발지역으로 공사시 먼지, 토사유출 등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추진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후, 주민의견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설명회는 사업대상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마을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함.
- 사업설명회는 반드시 설계초기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로 주민생활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적의 대안을 설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2021. 4. 21

심의의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총괄 의견

- 전반적으로 적절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이의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이의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적절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2021.4.14.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 평가(재협의))

□ 총괄의견

-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 범위는 다소 축소되어 있음.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는 조류에 의해 확산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류에 의한 토사확산 범위까지 평가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주변에 발달한 갯벌 및 겨울철 김양식 시설에 대한 영향여부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 심의의견

1. 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대상지역으로서 공사시 및 운영시 “부지 정지 공사시 경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토사의 해양유입이 예상되는 주변 해역”을 설정하였으나 공사시의 유출된 토사는 조류에 의해 그 확산범위가 결정되어 해양동식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범위를 500m 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조류로 인한 토사확산 범위까지로 확대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운영시에는 항공기의 얼음제거작업 등과 같은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유입이 예상되므로 오염수 발생량과 확산범위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해야 할 것임 또한 본 연장사업 장소가 운영시에 직접적인 오염수 처리 및 배출장소와 관련이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활주로 연장으로 인한 이착륙 항공기의 대형화, 여객 증가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배출 등은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상지역 설정시 고려하시기 바람.
- 따라서 운영시에는 남측의 탄도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서측갯벌을 모두 포함하고 남측으로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의 500m 범위를 2.0km 정도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환경 보전 방안의 대안

- 현재 평가준비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여 검토 필요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공사 중 유출된 토사가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조류에 의해 확산되어 주변 생태계 및 어업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평가 범위는 공간적으로 조류에 의한 토사확산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특히 겨울철 토사유입은 주변의 김양식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토사확산범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측정지점 및 조사지점: 현재 2개 지점을 토사확산 범위까지 확대하여 조사지

점을 늘리고, 3회의 조사 횟수는 계절조사를 기준으로 4회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조사항목 가운데 갯벌 저서생물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평가 준비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이 아님.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개괄하고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팔주로 확장시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하였는 바, 유출된 토사는 조류에 의해 확산 범위되어 그 영향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류의 확산범위를 고려하여 영향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운영시 항공기의 대형화, 여객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오염수 발생 등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주변 갯벌과 겨울철 김양식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평가 범위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2021. 4. 19.

심의위원 인